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지도관 1명)을 증원하면서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5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국립축산과학원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을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내 데이터 업무 수행 효율화를 위한 총괄 부서로 지식정보화담당관을 지정하여 부서 명칭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운영기획 및 사업추진 연계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교육훈련지원과를 교육훈련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농촌진흥청 하부조직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스마트농업 연구 기술개발을 전담하여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스마트농업팀을 신설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농자재육성팀을 폐지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차 소속기관 4개(사과연구소, 배연구소, 감귤연구소, 파속채소연구소)를 원예작물부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부무담당관·지식정보화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부무담당관·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정보화담당관”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8. 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활용·확산, 법정업무 대응 총괄

8의2.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8의3.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 산업진흥 업무

제7조제2항 중 “첨단농자재육성팀을”을 “스마트농업팀을”로,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을 “스마트농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기계의 품질관리·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의 수요조사·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13. 농기계 관련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14. 농기계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불량 농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

제7조제7항제16호(종전의 제11호) 중 “농약·비료”를 “농약·비료·농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을 “스마트농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사업기획·운영과 확산에 관한 사항

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전자통신 분야 산업 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3.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리 및 서비스의 제공·활용촉진,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8조제5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제25조의2제2항 중 “교육훈련지원”을 “교육훈련기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지원과장”을 “교육훈련기획과장”으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장단기”를 “중장기 및 연도별”로, “수립·평가”를 “수립·평가·포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규 교육훈련 연구·개발”을 “교육과정 설계·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교육훈련분야 대내외 협력

제25조의2제4항제1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설계·운영”을 “운영·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설계·운영”을 “운영·지원·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 과정의 운영·평가

9.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 중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사과연구소·배연구소·감귤연구소 및 파속채소연구소”를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시설원예연구소”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을 통해 K-라이스벨트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344”를 “3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3”을 “342”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3”을 “7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3”을 “22”로 하며, 농업연구관 1 다음에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345”를 “344”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73”을 “7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1”을 “20”으로 하며, 농촌지도관 “1”을 “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8”을 각각 “52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4”로 하며, 농업연구관 “79”를 “78”로 하고, 농업연구사 “250”을 “24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9”를 각각 “524”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5”를 “4”로 하며, 농업연구관 “80”을 “79”로 하고, 농업연구사 “250”을 “247”로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4”를 각각 “341”로 하고, 공업서기 “9”를 “8”로 하며, 농업연구사 “160”을 “15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5”를 각각 “342”로 하고, 공업서기 “9”를 “8”로 하며, 농업연구사 “159”를 “15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7”을 각각 “33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33”을 “330”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7”을 각각 “32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3”을 “320”으로 한다.

별표 10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 (제41조 관련) 다음에 “1. 제4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을 신설하고, “제41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를 삭제하며,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다음에 “2.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를 신설하며,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다음에 “총계 1”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1 다음에 “연구사 1”를 신설한다.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에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같은조 제5항, 제7조제2항 같은조 제7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조 제9항 같은조 제10항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농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지식정보화담당관</u> 및 <u>고객지원담당관</u> 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데이터정보화담당관</u>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지식정보화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u>데이터정보화담당관</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7. <u>농업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u>	<삭제>
7의2. <u>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삭제>

7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신 설>

<신 설>

<신 설>

8. ~ 11. (생 략)

13. (생 략)

14. 지방농촌진흥기관 정보화
지원

15. (생 략)

⑥ 삭 제

⑦ (생 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생 략)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연구개발과·연구관리과·농자
재산업과 및 첨단농자재육성팀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
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

<삭 제>

8. 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데이
터 관리·활용·확산, 법정업무
대응 총괄

8의2. 연구데이터의 수집·공유
· 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8의3.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
행정, 데이터 산업진흥 업무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삭 제>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스마트농업팀을 -----

관 · 보건연구원 · 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첨단농자
재육성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
무관 · 행정사무관 · 공업연구원
· 농업연구원 · 수의연구원 · 보
건연구원 · 환경연구원 또는 농
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 략)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연구데이터의 수집 · 공유 ·
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⑥ 삭 제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스마트농
업팀장-----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기계의 품질관리 · 유통관
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의 수요조사 · 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13. 농기계 관련 민원의뢰시험
의 관리

14. 농기계 관련 이의신청 및 청
문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의 농약·비료에 관한 사항

⑧ 삭 제

⑨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기계·첨단농자재의 품질 관리·유통관리·표준규격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첨단농자재의 수요 조사·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첨단농자재 관련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4. 농기계·첨단농자재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5. 부정·불량 농기계·첨단농자재 단속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농기계·첨단농자재에 관한 사항

제8조(농촌지원국) ①·② (생략)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부정·불량 농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

16. ----- 농약·비료·농기계
--

⑩ 스마트농업팀장-----
-----.

1.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기획·운영과 확산에 관한 사항

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전자통신 분야 산업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농촌지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생략)

9. ~ 11. 삭제

<신설>

<신설>

12. (생략)

④ 삭제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 23. (생략)

<신설>

⑥ ~ ⑪ (생략)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생략)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지원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훈련지원과장은 다음 사

1. ~ 8. (현행과 같음)

1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3.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리 및
서비스의 제공·활용촉진, 플랫폼
의 구축 및 운영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⑤ -----
-----.

2. ~ 23. (현행과 같음)

24.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
성·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교육
훈련기획-----

-----.

③ 교육훈련기획과장-----

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장단기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평가

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신규 교육훈련 연구·개발

7. (생략)

8. 농기계 및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전시관 운영 및 안전관리

<신설>

9. (생략)

④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의 설계·운영

2.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운영

3. 귀농인·창업농·도시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설계·운영

4.·5. (생략)

6. 교육훈련 결과의 분석·평가·포상

7.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장기 및 연도별 ----- 수립·평가·포상

6. ----- 교육과정 설계·연구개발

7. (현행과 같음)

<삭제>

9.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교육훈련분야 대내외 협력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

1. 공무원 등----- 운영·평가

2. 농업인 등----- 운영·지원·평가

<삭제>

4.·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육훈련 분야 지원 · 협력

<신 설>

<신 설>

제28조(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 사과연구소 · 배연구소 · 감귤연구소 및 파속채소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1조(한시정원) (생 략)

<신 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8. 농업기계 취급 · 조작 및 안전교육 과정의 운영 · 평가

9.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설 · 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28조(연구소) -----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 시설원예연구소-----

--.

제41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을 통해 K-라이스벨트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
행으로 신설되는 첨단농자재육
성팀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은 농자재산업과장이 분
장한다.

[시행일: 2022. 10. 15.] 제2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4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
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에 두
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4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신 설>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같은조 제5항, 제7조제2항 같은조 제7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조 제9항 같은조 제10항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

<신 설>

<신 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스마트농업팀은 20
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
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
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의 정원 3명(9급 1
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
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
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
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
하는 정원이 국립원예특작과학
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4</u>	<u>343</u>	-1
.	.	.	
.	.	.	
일반직 계	<u>343</u>	<u>342</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3</u>	<u>72</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농업서기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23</u>	<u>22</u>	-1
.	.	.	
.	.	.	
<u>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5</u>	<u>344</u>	-1
.	.	.	
.	.	.	
일반직 계	<u>344</u>	<u>343</u>	-1
.	.	.	
.	.	.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73</u>	<u>72</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21</u>	<u>20</u>	-1
.	.	.	
.	.	.	
농촌지도관	<u>1</u>	<u>2</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28</u>	<u>523</u>	-5
일반직 계	<u>528</u>	<u>523</u>	-5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 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5</u>	<u>4</u>	-1
.	.	.	
.	.	.	
농업연구관	<u>79</u>	<u>78</u>	-1
.	.	.	
.	.	.	
농업연구사	<u>250</u>	<u>247</u>	-3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29</u>	<u>524</u>	-5
일반직 계	<u>529</u>	<u>524</u>	-5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 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5</u>	<u>4</u>	-1
.	.	.	
.	.	.	
농업연구관	<u>80</u>	<u>79</u>	-1
.	.	.	
.	.	.	
농업연구사	<u>250</u>	<u>247</u>	-3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44</u>	<u>341</u>	-3
일반직 계	<u>344</u>	<u>341</u>	-3
.	.	.	
.	.	.	
공업서기	<u>9</u>	<u>8</u>	-1
.	.	.	
.	.	.	
농업연구사	<u>160</u>	<u>158</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45</u>	<u>342</u>	-3
일반직 계	<u>345</u>	<u>342</u>	-3
.	.	.	
.	.	.	
공업서기	<u>9</u>	<u>8</u>	-1
.	.	.	
.	.	.	
농업연구사	<u>159</u>	<u>157</u>	-2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37</u>	<u>334</u>	-3
일반직 계	<u>337</u>	<u>334</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3</u>	<u>330</u>	-3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27</u>	<u>324</u>	-3
일반직 계	<u>327</u>	<u>324</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3</u>	<u>320</u>	-3
.	.	.	

[별표 10]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제41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신 설>	1. 제41조 제1항 관 련 한시 정원(존 속기한: 2 024년 4 월 30일)	+1. 제41 조제1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4월 3 0일)
제41조	관련 한시 정원(존속 기한: 202 4년 4월 3 0일)	<삭 제>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4월 3 0일)
.	.	.	
일반직 계	<신 설>	1	+ 1
.	.	.	

2.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신 설>	2. 제41조 제2항 관 련 한시 정원(존 속기한: 2 025년 12 월 31일)	+2. 제41 조제2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5 년 12월 31일)
총계	<신 설>	<u>1</u>	+ 1
.	.	.	
연구사	<신 설>	<u>1</u>	+ 1